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9호로 2015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급 범위등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등 법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 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의 범위 규정
(안 제11조제3항)
- 다.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실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한다)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맞게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회의록, 의결서 작성, 위원 위촉 해제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 안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 제17조제1항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지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임

구 분	현 행	개 정
11조3항	<u>운영</u> 에 필요한 경비 지원	<u>위탁사무 처리</u> 에 필요한 경비
14조2항	구축 및 활동을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 다만,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